

의안번호	제 877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7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 : 2건(안 별표 1)
 -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무 신설 : 2건
 -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중
 - 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그 밖의 개정사항 : 2건 (안 별표 1)
 -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무명 변경 : 1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근거법령 정정 : 1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정 담당관	1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연 재난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연재난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 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연재난과	18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9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0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7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9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동체 협력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 ·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회계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복지 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 · 회계에 관한 지도 ·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51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정 책 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식 의 약 안 전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바. 마약의 소매 보고 사.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차.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카. 몰수마약류의 폐기 ·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경 제 기 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경 제 기 업 과	2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제33조 ¹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¹ , 제39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 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 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3항
투 자 유 치 과	1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 하며, 그 밖에 KCB복합, 옥산,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 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3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에너지과	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에너지과	<p>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p> <p>3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p> <p>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p> <p>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p> <p>4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p> <p>5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 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p> <p>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p> <p>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p> <p>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p> <p>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중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자장취소, 정량의 표시명령 정정요구</p> <p> 사. 보고 및 조사 등</p> <p> 아. 개선명령</p> <p>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p> <p>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p> <p>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6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p> <p> 가. 개선수리·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p> <p>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7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p> <p>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p> <p> 나. 보고 및 검사 등</p> <p>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8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가.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9 · 발전설비(송배전부분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사항</p> <p>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p>같은 법 31조제1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p>전기사업법 제71조</p> <p>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 제12조</p> <p>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p> <p>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p> <p>같은 법 제49조, 제50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p> <p>같은 법 제63조</p> <p>같은 법 제76조</p> <p>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p> <p>같은 법 제43조</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51조</p> <p>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제3항</p> <p>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공사 신고의 접수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농업정책과	1	·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유기농산과	1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2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
	3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같은 법 제24조
	4	·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같은 법 제26조
	5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축수산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문화예술 산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건축 문화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균형 발전과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마.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m²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사.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형 발전과	<p>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유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페. 사방설비 허. 방조설비 고. 하수도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p>	
5	• 기준면적포함 15만m ²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6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형 발전과	<p>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p> <p>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p> <p>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p> <p>12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p> <p>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p> <p>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p> <p>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p> <p>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p> <p>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p> <p>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p> <p>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p> <p>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p> <p>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p> <p> 나. 선수금 승인</p> <p> 다. 준공검사</p> <p>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p> <p>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p> <p>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p> <p>14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m²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p> <p>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p>	<p>같은 법 제98조</p> <p>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p> <p>같은 법 제133조</p> <p>도시개발법 제4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7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58조</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25조</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1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3조</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같은 법 제16조의2</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군 형 발 전 과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 로 과	<p>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p> <p>나. 점용공사의 확인</p> <p>다. 점용료의 징수</p> <p>라. 점용료의 징수제한</p> <p>바. 변상금의 징수</p> <p>사. 원상회복</p> <p>사. 수수료의 징수</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p> <p>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p> <p>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p> <p>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p> <p>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p> <p>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p> <p>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p> <p>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p> <p>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p> <p>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p> <p>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바. 도로에 관한 조사</p> <p>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p> <p>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p> <p>5 · 도유재산 용도폐지</p> <p>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 수익허가</p>	<p>도로법 제61조, 91조</p> <p>같은 법 제62조제2항</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3조</p> <p>같은 법 제103조</p> <p>같은 법 제117조</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p> <p>같은 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106조</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69조, 90조</p> <p>같은 법 제96조</p> <p>같은 법 제97조</p> <p>같은 법 제102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p> <p>같은 법 제14조, 제20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교 통 정 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 등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2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4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5	•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사용약관 인가 다.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라. 사용명령 마. 위치의 변경 바. 사업의 양도양수 · 합병 · 상속 휴지 및 폐지 사. 재정지원, 조합감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자.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차. 정관변경 등의 명령 카.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4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6조
	7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운영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 변경) 신고 처리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8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 · 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 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 · 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 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정 책 과	9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같은 법 제22조제1항
	10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등록	같은 법 제4조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파. 청문	같은 법 제86조
		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체계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차. 보고·검사 등 카.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파.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거.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너.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더.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며. 의견제출 버. 과징금의 부과·징수 서. 대집행 및 비용징수 어. 청문 저. 과태료의 부과·징수 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커. 허가증의 재교부 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4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의2 같은 법 제39조의3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47조의2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의2 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나.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라.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환경 정책과		자.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카. 보고·검사 등 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하. 방치폐기물의 처리 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더.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6조
기 대 기 과	1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에 한함)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파.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4	·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다음 사무 가. 가정용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5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기 후 대 기 과	가. 연료의 공급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6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 제4항
10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 ·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 · 시설 · 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12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3	• 디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 · 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연차보고서의 제출 마.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
15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6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수자원 관리과	1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2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3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 지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13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 및 신춘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관 계 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 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관련 법령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자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 운반 · 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 · 운반 ·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 · 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 (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 · 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 · 소각재 · 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 · 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 · 장치 등을 갖출 것
 -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 · 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

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 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3. 12. 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 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